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전문대학의 작업치료사 4년제 과정 근거 마련〉

■ 이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389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개호 의원 등 33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7.
3. 회부연월일 : 2025. 5.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기능회복을 돕는 재활전문가이며 치료과정에서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재활치료의 영역에 속하는 두 직종이 학제에서부터 구별되어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병원 등 현장에서 직군 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임금과 처우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 50조의3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법률 제20561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 제50조의3(의료인·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u>물리치료사</u>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법률 제20561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 제50조의3(의료인·의료기사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 ----- ----- -----<u>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u>-----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전문대학의 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은 일반적으로 2년의 연한으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 4년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¹⁾²⁾

최근 「고등교육법」 개정(2024.12.20.)³⁾을 통해 물리치료과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작업치료과 등 나머지 의료기사는 수업연한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3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작업치료과의 수업연한을 4년으로 연장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전문대학 작업치료과의 수업연한 연장은 작업치료사의 업무역량을 강화시켜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있겠으나, 그 연장 여부의 구체적 타당성, 타 의료직종과의 형평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행 작업치료사 양성 교육 체계는 전문대학의 3년제 과정과 대학의 4년제 과정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 두 과정 모두 졸업 이후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같은 작업치료사 면허증을 받고, 동일하게 작업치료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⁴⁾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업 등에서 다른

-
- 1) 「고등교육법」 제48조(수업연한) ①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학사학위과정: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2년 이상
 - 2)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정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① 제4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 중 물리치료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법률 제20561호, 시행 2025. 6.21.]
 - 3)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전문대학의 수업연한) ①법 제48조에 따라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3년으로 하는 경우는 간호과·방사선과·임상병리과·물리치료과·치기공과·치위생과·작업치료과·어업과 및 기관과로 한다.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다만,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작업치료사의 심화과정을 위한 석·박사 및 전문기술석사 모두 학사학위를 가질 것을 요구하는데,⁵⁾⁶⁾ 3년제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석사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4년제 과정을 다시 이수하거나, 전공심화과정⁷⁾을 이수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이 입법화되어 전문대학이 3년제 과정인 작업치료사 교육체계를 4년제 과정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면 전문대학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한 학생도 작업치료사의 심화과정을 위한 석·박사 및 전문기술석사로 바로 진학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국 사실상 작업치료사 교육과정이 4년제로 일원화될 것으로 보이며, 그간 교육과정이 다르다는 이유로 취업 등에서 다른 대우를 받았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2024년 기준, 작업치료과 3년제를 운영하는 전문대학 26개 중 9개 학교가 1년 수업연한을 추가한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하여 학사학위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이어야 한다.

5)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 ③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④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6) 「고등교육법」 제50조의4(전문기술석사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③ 제1항에 따른 전문기술석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7) 「고등교육법」 제50조의2(전공심화과정에 대한 학위수여) ①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여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수여하고 있으며, 전체 작업치료과 3년제 입학정원 1,103명 기준 대비 전공심화과정 모집정원은 194명으로 약 17.6% 수준임.

< 학제별 의료기사 양성학과 입학정원 >

(단위 : 명)

구분	전문대학(A)	전공심화 과정정원 (B)	전공심화 정원비율 (B/A)	일반대학(C)	대학원	
					석사 (D(D/C))	박사
물리치료과	2,300	890	39%	1,932	311(16%)	65
작업치료과	1,103	194	18%	1,316	87(7%)	7
임상병리과	1,733	429	25%	1,206	18(15%)	18
방사선과	1,559	370	24%	838	62(7%)	20
치위생과	3,855	612	16%	1,215	40(3%)	11
치기공과	993	196	20%	250	4(2%)	1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KEDI) 고등교육통계('24.4.1.기준)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교육열로 인해 대학 간 서열화가 뚜렷한 편임을 고려할 때, 같은 작업치료사 면허임에도 다른 대우를 받는 문제가 전문대학에 4년제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보건의료체계는 작업치료사를 비롯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묶어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⁸⁾

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 ①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② 의료기사는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임상병리사: 각종 화학적 또는 생리학적 검사

최근 4년제 과정을 도입한 물리치료사에 이어 개정안을 입법화하여
작업치료사도 4년제 과정을 도입하는 경우, 다른 의료기사들 및 관련
대학, 협회 등 또한 이와 동일한 요구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타 의료기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비교 >

구분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치료목표	일상생활 기능 회복 및 자립 지원	신체 기능 회복, 통증 완화, 근력 및 운동 능력 향상
중점영역	일상생활동작(ADL), 인지, 감각, 심리·사회적 기능	운동기능, 관절가동성, 근력, 균형, 보행 등
보조기기	중추신경계 질환, 발달장애, 치매, 손 기능 저하 등	근골격계·신경계 손상 후의 운동장애, 통증 등
치료방법	활동 중심 치료(요리, 글쓰기 등), 감각통합치료, 인지훈련 등	운동치료, 전기치료, 도수치료 등 물리적 기법
대상연령	전연령(성인, 노인 중심)	전연령(소아부터 노인까지 다양)
주요활동장소	병원, 복지관, 특수학교, 정신과 병동, 지역사회기관 등	병원재활센터, 스포츠 재활, 요양 병원 등
전공	작업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학제	대학교(4년제), 전문대학(3년제) 작업치료학과	대학교(4년제), 전문대학(4년제) 물리치료학과

참고로, 앞서 개정안과 같은 취지인 전문대학 물리치료과를 4년제
과정으로 확대하는 법안⁹⁾ 심사과정에서 전문대학 물리치료과가 입학

2. 방사선사: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
3. 물리치료사: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4. 작업치료사: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회복시키기 위한 작업요법적 치료
5. 치과기공사: 보철물의 제작, 수리 또는 가공
6. 치과위생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 관리 등
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577, 남인순의원·김대식의원 공동 대표발의)

정원 대비 전공심화과정 정원 비율(37%)과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비율이 의료기사 양성학과 중 가장 높아 전문대학 물리치료과 학생들의 학사학위 취득 수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 바 있음.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①전문대학 작업치료과 학생과 학부모의 학사학위에 대한 수요는 타 의료기사 양성학과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②4년제 확대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 증대와 입직 지연 우려, ③3년제로 운영되는 타 의료기사 양성학과와 형평성 문제, ④임금 및 처우 등 보건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부처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93